

1. 개정이유

다중이용시설 내 능동적 실내공기질 관리를 유도하기 위한 실내공기질 관리 우수시설(이하 우수시설) 지정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으로 「실내공기질 관리법」이 개정(법률 제20855호, 2025.3.25. 공포, 2026.3.26. 시행)됨에 따라 ‘실내공기질 관리 우수시설’로 지정받으려는 시설이 준수하여야할 실내공기질 기준, 지정·재지정 절차와 이에 필요한 서류 등 서식을 규정하는 한편, 우수시설 지정 취소 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우수시설 신청 조건과 지정 절차 등을 규정(안 제11조의2 신설, 별지 제2호의10, 11, 12)

- 1) 우수시설로 지정받으려는 시설이 준수해야할 실내공기질 관리 기준을 실내공기질 유지기준 및 권고기준의 80% 수준으로 설정

※ 법 제5조와 제6조의 내용

- 2) 우수시설로 지정받으려는 자가 제출해야 할 증빙자료와 우수시설 심사 절차 등을 규정

- 3) 우수시설 지정에 필요한 비용 지원·지정서 발급 등 지원 근거 규정

나. 우수시설 취소 기준 및 절차(안 제11조의3 신설)

- 1) 우수시설 대상이 폐업하거나 용도변경으로 법 적용에서 제외되는 등 우수시설 지정을 취소해야 하는 기준 및 절차 등을 규정함.

다. 우수시설 재지정 기준 및 절차(안 제11조의4 신설)

- 1) 우수시설 지정기준 등을 준용하여 우수시설 재지정 기준 및 절차를 규정함.
- 2) 우수시설이 우수시설 재지정을 위해 제출해야 하는 서류 및 지정기준 등에서 면제되는 내용을 규정함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OOOO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9999. 12. 31. ~ 12. 31.)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3) 행정규제 :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 이견 없음
- 규제 신설·폐지 등, 없음

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의2를 제11조의5로 하고, 제11조의2부터 제11조의4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1조의2(실내공기질 관리 우수시설의 지정 등) ① 법 제12조의3제1항의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실내공기질 기준”이란 법 제5조에 따른 실내공기질 유지기준과 법 제6조에 따른 실내공기질 권고기준의 80% 이내의 수준을 말한다.

② 법 제12조의3제2항에 따라 실내공기질 관리 우수시설(이하 “우수시설”이라 한다)로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2호의10서식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사업자등록증 사본
2. 지난 4년간의 법 제7조에 따른 관리자 교육 이수 내역
3. 지난 4년간의 법 제12조에 따른 실내공기질의 측정기록
4. 지난 4년간의 법 제13조에 따른 보고·검사 결과
5. 제1항에 따른 실내공기질 기준을 유지하기 위한 운영 계획과 설비 현황에 관한 서류

6. 간이측정기 구매·관리에 관한 서류

③ 제2항에 따라 지정 신청을 받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지정기준 충족 여부에 대하여 심사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지정여부 결정에 필요한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고,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④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지정 심사 결과에 대하여 적합성을 검토하여 우수시설의 지정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⑤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4항에 따라 우수시설로 지정을 받은 자에게 별지 제2호의11서식의 지정서를 발급하고, 별지 제2호의12서식의 실내공기질 관리 우수시설 현판을 교부하여야 한다.

⑥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4항에 따라 우수시설로 지정된 시설의 다음 각 호의 정보를 기후에너지환경부 홈페이지와 법 제12조의6에 따른 실내공기질 관리 종합정보망에 게시할 수 있다.

1. 우수시설의 상호 및 대표자 성명

2. 우수시설의 소재지·시설 유형

3. 우수시설의 사업자등록번호

4. 지정 기간

⑦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우수시설 지정제도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그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⑧ 제1항부터 제7항까지에서 정한 사항 외에 우수시설의 지정기준, 방

법, 운영관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한다.

제11조의3(실내공기질 관리 우수시설 취소 등) ①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은 법 제12조의3제4항에 따라 우수시설 지정을 취소하려는 경우에는 청문을 하여야 한다.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12조의3제4항에 따라 우수시설의 지정을 취소하였을 때에는 그 사실을 기후에너지환경부 홈페이지와 법 제12조의6에 따른 실내공기질 관리 종합정보망에 게시하여야 한다.

③ 법 제12조의3제4항제3호에 따른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를 말한다.

1. 다중이용시설을 폐업한 경우

2. 다중이용시설의 용도 변경 등으로 법 제3조에 따른 법 적용대상 다중이용시설이 아니게 된 경우

제11조의4(실내공기질 관리 우수시설 재지정 등) ① 법 제12조의4에 따라 우수시설로 재지정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2호의10서식 신청서에 제11조의2제2항 각 호의 서류 중 변경사항이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그 유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까지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재지정의 기준 및 절차는 영 제10조의2와 규칙 제11조의2를 준용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영 제5조와 제10조에 따라 면제된

사항에 대해서는 제출하지 아니한다.

별지 제2호의10서식부터 별지 제2호의12서식까지를 각각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실내공기질 관리 우수시설 지정 신청서

※ 색상이 어두운 칸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으며,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를 합니다.

접수번호	접수일시	처리기간
신청 현황	시 설 명	
	대 표 자	사업자등록번호
	담 당 자	지정 / 재지정
	주 소 (전화번호: 팩스: 이메일:)	
시설 용도	[] 지하역사 [] 지하도상가 [] 철도역사 대합실 [] 여객자동차터미널 대합실 [] 항만 대합실	
	[] 공항 여객터미널 [] 도서관 [] 박물관·미술관 [] 대규모 점포 [] 장례식장 [] 영화상영관	
	[] 학원 [] 전시시설 [] PC방 [] 목욕장업 [] 의료기관 [] 산후조리원	
	[] 노인요양시설 [] 어린이집 [] 실내 어린이놀이시설 [] 실내주차장	
일반 현황	연면적(㎡)	준공년도(또는 개소년도)
	건물의 총 층수 / 사용층	주방 및 식당 유무 [] 있음 [] 없음
	개폐 가능한 창문 유무 [] 있음 [] 없음	실내공기질 관리자 명
시설관리 현황	유지·관리 계획 수립 여부 [] 있음 [] 없음	간이측정기 설치 여부 [] 있음 [] 없음
	환기설비 현황	[] 자연환기 [] 실내환기팬 [] 공조기 [] 기타(직접 기입)
	저감설비 현황(전부 표시)	[] 공기청정기 [] 온·습도 관리설비 [] 기타(직접 기입)

「실내공기질 관리법」 제12조의3에 따라 위와 같이 실내공기질 관리 우수시설 지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귀하

첨부서류	가. 사업자등록증 사본 나. 지난 4년간의 법 제7조에 따른 관리자 교육 이수 내역(재지정시 생략) 다. 지난 4년간의 법 제12조에 따른 실내공기질 측정 기록(재지정시 생략) 라. 지난 4년간의 법 제13조에 따른 보고·검사 결과 마. 실내공기질 유지·관리 계획 및 설비 현황에 관한 서류 바. 간이측정기 구매·관리에 관한 서류	수수료 없 음
처리절차		
신청서 작성 신청인	→ 접수 기후에너지환경부	→ 지정 심사 ↓ 부적합 종료
		적합 → 지정서 발급 및 현판 교부 기후에너지환경부

실내공기질 관리 우수시설 지정서

1. 상호:
2. 사업자등록번호:
3. 소재지:
4. 대표자 성명:
5. 시설 유형:
6. 지정 기간:
7. 지정 번호:
8. 지정 · 재지정 여부: 지정 / 재지정

「실내공기질 관리법」 제12조의3에 의거하여 실내공기질 관리 우수 시설로 지정합니다.

년 월 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직인



1. 크기: 가로 20cm×세로 20cm, 두께 0.5cm
2. 재질: 아크릴 판
3. 글자체: 맑은 고딕
4. 색상: 바탕(흰색, 초록색), 글씨(흰색)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u><신 설></u>	<u>제11조의2(실내공기질 관리 우수 시설의 지정 등) ① 법 제12조의3제1항의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실내공기질 기준”이란 법 제5조에 따른 실내공기질 유지기준과 법 제6조에 따른 실내공기질 권고기준의 80% 이내의 수준을 말한다.</u> <u>② 법 제12조의3제2항에 따라 실내공기질 관리 우수시설(이하 “우수시설”이라 한다)로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2호의10 서식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u> <u>1. 사업자등록증 사본</u> <u>2. 지난 4년간의 법 제7조에 따른 관리자 교육 이수 내역</u> <u>3. 지난 4년간의 법 제12조에 따른 실내공기질의 측정기록</u> <u>4. 지난 4년간의 법 제13조에 따른 보고·검사 결과</u> <u>5. 제1항에 따른 실내공기질 기준을 유지하기 위한 운영 계</u>

획과 설비 현황에 관한 서류

6. 간이측정기 구매·관리에 관한 서류

③ 제2항에 따라 지정 신청을 받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지정기준 충족 여부에 대하여 심사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지정여부 결정에 필요한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고,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④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지정 심사 결과에 대하여 적합성을 검토하여 우수시설의 지정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⑤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4항에 따라 우수시설로 지정을 받은 자에게 별지 제2호의11서식의 지정서를 발급하고, 별지 제2호의12서식의 실내공기질 관리 우수시설 현판을 교부하여야 한다.

⑥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4항에 따라 우수시설로 지정된 시설의 다음 각 호의 정보를 기후에너지환경부 홈페이지와 법

<신 설>

제12조의6에 따른 실내공기질 관리 종합정보망에 게시할 수 있다.

1. 우수시설의 상호 및 대표자 성명

2. 우수시설의 소재지·시설 유형

3. 우수시설의 사업자등록번호

4. 지정 기간

⑦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우수시설 지정제도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그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⑧ 제1항부터 제7항까지에서 정한 사항 외에 우수시설의 지정 기준, 방법, 운영관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한다.

제11조의3(실내공기질 관리 우수시설 취소 등) ①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은 법 제12조의3제4항에 따라 우수시설 지정을 취소하려는 경우에는 청문을 하여야 한다.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신 설>

제12조의3제4항에 따라 우수시설의 지정을 취소하였을 때에는 그 사실을 기후에너지환경부 홈페이지와 법 제12조의6에 따른 실내공기질 관리 종합정보망에 게시하여야 한다.

③ 법 제12조의3제4항제3호에 따른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를 말한다.

1. 다중이용시설을 폐업한 경우
2. 다중이용시설의 용도변경 등으로 법 제3조에 따른 법 적용 대상 다중이용시설이 아니게 된 경우

제11조의4(실내공기질 관리 우수시설 재지정 등) ① 법 제12조의4에 따라 우수시설로 재지정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2호의10 서식 신청서에 제11조의2제2항 각 호의 서류 중 변경사항이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그 유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까지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재지정의 기준

<u>제11조의2</u> (생략)	및 절차는 영 제10조의2와 규칙 제11조의2를 준용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영 제5조와 제10조에 따르면 제된 사항에 대해서는 제출하지 아니한다. <u>제11조의5</u> (현행 제11조의2와 같음)
---------------------------	---